



저소득층 지원: 파트 D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

2003년 메디케어 현대화 법 (MMA로 알려짐)은 메디케어에 처방약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처방약 혜택 (메디케어 파트 D라고 함) 은 2006년 1월에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이 법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층 보조 (LIS)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보조 (LIS)의 혜택

저소득층 보조는, 파트 D 보험료, 공제액,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파트 D 처방약 플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조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보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에 있는 “2009년도 추가 보조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IS 에 자격이 있는 모든 수혜자는 연 중 어느 때라도 한달에 한 번 파트 D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저소득층 보조 신청하기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저소득층 보조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이러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 등록을 우편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또한 파트 D 플랜에 자격이 주어지는 때에, 이 플랜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약 보험에 대해 어떻게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편지를 받게 될것입니다.

비용 공유 (SOC) 메디칼의 경우

비용 공유 (SOC) 메디칼을 가지고 있다면,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SOC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에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한, LIS에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SOC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을 통해 LIS 를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2-26-09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맞으면 LIS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1월과 6월 사이 어느 한 달이라도 SOC 에 자격이 되면, 일년 내내 LIS 프로그램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6월과 12월 사이 어느 한 달이라도 SOC에 자격이 되면, LIS 에 남은 해 동안 그리고 다음해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메디칼 SOC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cahealthadvocates.org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메디칼" 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메디케어는 가지고 있지만 메디칼에 자격이 없으며,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 (MSPs)중 하나에 등록을 한 경우, LIS을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에는 자격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 (QMB); 특정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 (SLMB); 자격 있는 개인 프로그램 (QI)이 있습니다.

본인이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파트 D 플랜에 등록됩니다. 이러한 "용이한" 등록은 파트 D 혜택에 자격이 있는 날 부터 수 개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cahealthadvocates.org에 있는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다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수혜자 추가 보조 프로그램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FPL)의 150% 이하이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산 요건이 충족되지만 다른 보조 프로그램 (위에 언급한 메디칼 또는 SOC 또는 MSP 가 동반된 메디칼)을 받고 있지 않다면, 지역 사회 보장이나 메디칼 사무소를 통해 저소득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사무소에 신청을 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받게 됩니다. 전화나 (1-800-772-1213) 사회 보장 웹사이트 socialsecurity.gov 를 통해 저소득 보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이 FPL의 135-150% 로 높으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추가 보조 자격 2009.") 일부 보조로는, 표준 플랜에 등록했다 하더라도(아래에 설명 참조) 보험료와 공제액의 일부를 내야합니다. (소득의 정도에 따라 퍼센티지가 다름)

LIS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고 또 신청을 하였으며,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 하지 않는 상태이면 파트 D 플랜에 등록이 됩니다. (위에 언급한 MSP 등록과 비슷한 경우). 이는 보조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날 부터 수 개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퇴직 보험

퇴직 보험으로서 처방약 보험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수혜자는 LIS 또는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신청하기 전에 퇴직 혜택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어떤 저소득 퇴직자는 퇴직 보험과 파트 D 추가 보조를 함께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등록

처방약 보험과 함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했다면, 저소득층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소득 보조는 처방약 혜택을 받게 해 주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 및 병원 혜택에 대한

보험료는 귀하의 책임입니다.

cahealthadvocates.org 에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플랜

캘리포니아의 평균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가지고 있는 기본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표준 플랜이라고 합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의 표준 또는 평균 보험료는 \$24.86입니다. 저소득 전액 보조는 표준 보험의 보험료와 공제액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는 귀하가 LIS 보조를 받고, 표준 플랜에 등록 했을 시, 보험료와 공제액을 내지 않아도 됨을 뜻합니다. 그러나, 각 보험이 보상하는 약에 대해서는 공동 지불 \$1.10-\$6.00을 내야 합니다.

2009년 표준 플랜은:

브라보 Rx	bravohealth.com	1-866-467-3128
퍼스트 헬스 파트 D – 프리미어	firsthealthpremier.net	1-800-588-3322
헬스 넷 오렌지 옵션 1	healthnet.com	1-800-806-8811
Rx어메리카에 의한 어드밴티지 스타 플랜	rxamerica.com	1-800-429-6686
메디케어Rx 리워드스탠다드	medicarerxrewards.com	1-877-865-2522
웰케어 클래식	wellcare.com	1-888-423-5252

저소득층 전액 보조에 자격이 있으면, 표준 플랜보다 보험료가 비싼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보조금 (\$24.86) 과 플랜의 보험료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플랜의 설명 전부를 보시려면, cahealthadvocates.org에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추가 보조/ LIS에 대한 자격

만약 귀하가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 (QMB, SLMB 또는 QI) 에 자격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2009년 추가 보조와 함께 처방약 보험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귀하의 소득이 ...	귀하의 자산이 다음과 같거나 그 이하...	본인 지불 (위에 언급한 플랜에 대해)
연방 빈곤 수준 (FPL)의 100% 이하: 독신 월 \$903, 연간 \$10,830 부부 월 \$1,214, 연간 \$14,570 <i>예를 들면, QMB 프로그램에 있거나 SSI를 받는 사람</i>	독신 \$4,000 부부 \$6,000	월 보험료 없음 공제액 없음 제네릭 당 \$1.10 그리고 브랜드 당 \$3.20의 본인 부담금 주의: 메디칼을 가지고 요양원에서 사는 사람은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FPL의 100%는 넘지만 135% 이하: 독신 월 \$1,218, 연간 \$14,621 부부 월 \$1,639, 연간 \$19,670 <i>예를 들면, SLMB 또는 QI 또는 메디칼A&D에 있는 사람</i>	독신 \$4,000 부부 \$6,000	월 보험료 없음 공제액 없음 제네릭 당 \$2.40 그리고 브랜드 당 \$6.00의 본인 부담금
FPL의 135% 이상 <u>그리고</u> 2008년 7월 1일자로 어떤 달이든 메디칼 SOC에 해당되는 경우: 독신 월 \$1,218, 연간 \$14,621 부부 월 \$1,639, 연간 \$19,670	독신 \$2,000 부부 \$3,000	월 보험료 없음 공제액 없음 제네릭 당 \$2.40 그리고 브랜드 당 \$6.00의 본인 부담금

추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2009년도에는 다음의 경우에 사회 보장국을 통해 신청할¹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소득이 다음 미만이면.....	귀하의 자산이 다음과 같거나 그 이하 ² ...	본인 지불 (위에 언급한 플랜에 대해)
FPL 의 135%: 독신 월 \$1,218, 연간 \$14,621 부부 월 \$1,639, 연간 \$19,670	독신 \$8,100 부부 \$12,910	월 보험료 없음 공제액 없음 제네릭 당 \$2.40 그리고 브랜드 당 \$6.00의 본인 부담금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2-26-09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다음 미만이면.....	귀하의 자산이 다음과 같거나 그 이하 ² ...	본인 지불 (위에 언급한 플랜에 대해)
FPL 의 135%: 독신 월 \$1,218, 연간 \$14,621 부부 월 \$1,639, 연간 \$19,670	독신 \$12,510 부부 \$25,010	월 보험료 없음 \$60 공제액 전체 약 값이 \$6,153.75를 초과 한 후 15% 공동 보험, 제네릭 당 \$2.40 그리고 브랜드 당 \$6.00의 본인 부담금
FPL의 150%: 독신 월 \$1,354, 연간 \$16,245 부부 월 \$1,821, 연간 \$21,855	독신 \$12,510 부부 \$25,010	연동제 월 보험료 \$60 공제액 전체 약 값이 \$6,153.75를 초과 한 후 15% 공동 보험, 제네릭 당 \$2.40 그리고 브랜드 당 \$6.00의 본인 부담금.

¹ 추가 보조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에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² 장례금으로 모아둔 돈은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독신 \$1,500, 부부 \$3,000.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2-26-09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